

의안번호	2124116
의 퇴 인	윤미향의원
회 답 일	2023. 11. 03.
추계번호	23A3871

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에 1억 1,300만원, 2029년에 1억 1,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5억 6,500만원(연평균 1억 1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지원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113	113	113	113	113	565	113
합 계	113	113	113	113	113	565	113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지원사업계획의 수립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 (지원사업의 종류 등)	○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·문화 등으로 함	의무규정
3	안 제9조 (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규정된 전문기관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0조 (의료시설의 설치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1조 (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에 공공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2조(이주대책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(매수청구)	○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16조제3항 (주변지역등 지정·고시)	○ 환경부장관이 주변영향지역을 지정·고시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·건강상 영향을 조사하도록 함	의무규정
9	안 제19조 (환경상 영향조사)	○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	의무규정
10	안 제20조 (주민의 건강 역학조사)	○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	의무규정
11	안 제23조 (환경오염 방지 조치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지원사업계획의 수립)	○	—
2	안 제8조 (지원사업의 종류 등)	×	○지원사업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¹⁾ 현 시점에서는 지원사업 실시 에 따른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 가 있음
3	안 제9조 (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)	×	○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건강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수나 단위 지역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 나, 제정안에 따라 실시될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 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 므로 ²⁾ 현 시점에서 지원사업의 대상, 방법,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4	안 제10조 (의 료 시 설 의 설 치)	×	○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의료시설의 개소 수 증가 분에 1개소당 설치·운영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추가로 운영되는 국가산 업단지 환경오염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의 개소 수 및 의료시설 설치·운영비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 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5	안 제11조 (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)	×	○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공공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 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³⁾ 현 시점에서 공공편 익시설 및 체육시설의 면적 및 개수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- 1) 안 제8조(지원사업의 종류 등) 제8조(지원사업의 종류 등) 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(1~2호 생략)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·방법·대상·시행기간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안 제9조(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3) 안 제11조(주변지역등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등에 공공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6	안 제12조(이주대책)	×	○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이주대상 가구 수에 평균 이주 비용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는데, 이주정착금 규모 파악의 기초가 되는 이주대상 가구 수, 평균 이주 비용, 지원을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7	안 제 13조(매수청구)	×	○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토지 등 면적에 평균 보상금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는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⁴⁾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8	안 제16조제3항 (주변지역등 지정·고시)	×	○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, 면적, 지정 시기 및 목적에 따라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질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9	안 제19조 (환경상 영향조사)	×	○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의 위치, 면적, 지정 시기 및 목적에 따라 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질 것이고,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⁵⁾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10	안 제20조 (주민의 건강 역학조사)	×	○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건강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수나 단위 지역 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,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⁶⁾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11	안 제 23조 (환경오염 방지 조치)	×	○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방진, 방풍 등 오염방지 시설 수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에 소요되는 전력비, 약품비 등 유형별 지원단가를 곱하여 추계할 수 있는데,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⁷⁾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4) 안 제13조(매수청구)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
5) 안 제 19조(환경상 영향조사) 환경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등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조사(이하 “환경상 영향조사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6) 안 제20조(주민의 건강 역학조사)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및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(이하 “주민의 건강 역학조사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7) 안 제23조(환경오염 방지 조치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진·방풍 등 오염방지지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 추계함
 -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.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의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원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 -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계획은 안 제6조에서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⁸⁾ 2025년부터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본 추계에 참고한 지원계획 등의 수립 비용 내역(평균 113백만원)
 -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관리기본계획 현행화(산업통상자원부) 사업예산: 140백만원
 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련 제도개선 방안연구(산업통상자원부) 사업예산: 150백만원
 -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(행정안전부) 사업예산: 49백만원
 -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억 1,300만원 등 향후 5년동안 5억 6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
지원사업계획의 수립(안 제6조)	113	113	113	113	113	56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8) 안 제6조(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Ⅲ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은기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은기	02-6788-3750	ekkim@assembly.go.kr